

지정수선: 인정명 간사
방산: 원

울 산 지 방 법 원

2000. 7. 28. 원판부
2000. 7. 28. 원판부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0고합14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 고 인 1. 이 수 원, 울산참여자치연대대표

주거

본적

2. 김 태 근, 울산참여연대사무국장

주거

본적

검 사 금 태 섭

변 호 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 규 명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위 등본입니다
울 산 지 방 법 원
법원주사 이상

2000. 7. 28.



담당변호사 윤 인 섭 (피고인 1.을 위하여)

-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법 죄 사 실

피고인 이수원은 울산충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피고인 김태근은 울산충선시민연대 집행위원으로, 충선시민연대에서 낙선운동대상자로 발표한 울산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김태호 후보, 남선거구에 출마한 최병국 후보, 차수명 후보, 동구 선거구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시민연대 소속 회원 13명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또는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장소, 공개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자동차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10:00

2000. 4. 5. 14: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젠 바꿀거야, 부패정치심판, 유권자서명운동”의 현수막을 울산 80터 1121호 차량에 설치하고, 텔레토비 인형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회원 2명은 가슴에 “out 낙선후보”의 표창등을 착용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낙선폭박자 후보 찍지 말고 정치개혁 이룩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선거구민 120여명을 상대로 “나는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명용지에 서명을 받는 등으로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및 현수막·표창 등을 설치·부착하여 서명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범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천수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촬영한 사진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서명달인운동금지 위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

4호, 제91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위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형법 제30조

집회제한 위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2

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서명날인

운동금지위반죄의 정한 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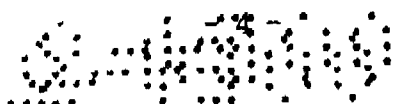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0. 7. 28.

재판장 판사 이수철 _____

판사 최용호 _____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 사 _____

판 사 신 력 재 _____